



제439회국회(정기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〉

■ 이주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7354호)

2026. 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동찬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 의견	3
1. 개정안의 주요내용	3
2. 검토의견	4

I. 개요

1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이주영의원 등 10인

(2) 제 안 일 : 2026. 3. 10.

(3) 회 부 일 : 2026. 3. 1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, 인공지능(AI) 스피커, 가정 내 사물인터넷(IoT)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,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.

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

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).

Ⅱ. 검토 의견

1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.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2. 검토의견

- 홀로 사는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며, 2024년 기준 약 228만명 이상의 노인이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.

< 홀로 사는 노인 현황 >

(단위: 명, 가구 수, %)

구분		2020	2021	2022	2023	2024
독거노인 비율	65세 이상 인구	8,496,077	8,851,033	9,267,290	9,730,411	10,256,782
	65세 이상 1인 가구 수	1,660,711	1,824,434	1,973,416	2,138,107	2,288,807
	독거노인 비율 ¹⁾	19.5	20.6	21.3	22.0	22.3

주1) 독거노인비율 = (65세 이상 1인 가구 수 ÷ 65세 이상 인구) × 100

자료: 국가통계포털

- 「2023년도 노인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 집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87.2%에 달했고,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도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(48.9%)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(27.7%)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- 이에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추세와 함께 노인 1인 가구 및 노년 부양비의 증가에 따라 공적 돌봄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.

< 연도별 노년 부양비 현황 >

(단위: 명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노년 부양비	23.1	24.4	25.8	27.4	29.3

※ 노년 부양비: [고령(65세 이상)인구 ÷ 생산가능인구(15~64세)] × 100

자료: 국가통계포털

- 한편,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¹⁾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위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는 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’와 ‘응급안전안심서비스’가 있음.
- 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’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생활지원사가 직접 안전확인·사회참여·생활교육·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,
- ‘응급안전안심서비스’는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가정 내 설치된 기기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건강 및 정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.

1) 「노인복지법」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<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내용>

구분	노인맞춤돌봄서비스	응급안전안심서비스
목적	○ 지역사회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·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, 장기요양 대상으로의 진입을 지연 및 예방하고,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함	○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 및 안전망 제공
사업 대상	○ 65세 이상 기초생활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·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* 신체·정신·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	○ 65세 이상 독거노인(소득무관), 기초생활·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2인 가구(2인 모두 75세 이상)나 조손 가구, 중증장애인(활동지원수급자 중 취약 가구) 등
사업 내용	○ 생활지원사가 직접 안전확인·사회참여·생활교육·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	○ 가정 내 ICT 기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·정서 지원 - 응급대처 · (응급호출)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 설치, 응급상황 시 버튼 또는 음성으로 119 신고 · (화재감지) 화재 감지 및 119 신고 · (활동량감지)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(움직임 및 심박·호흡 등 측정)를 통한 생체정보 관리 - 부가서비스 · 영상통화, 노래, 스트레칭 영상 등을 통해 건강·정서 관리 지원
수행 체계	○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	○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
'26년 예산 (국비기준)	○ 5,894억원 (보조율: 서울 30%, 지방 70%)	○ 329억원 (보조율 50%)

자료: 보건복지부

<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ICT 기기 기능 >



자료: 보건복지부

- ‘응급안전안심서비스’는 독거노인의 증가 및 그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접목하여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,
2007년 「노인복지법」에 ‘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’ 규정이 신설되고,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,
- 기술적 측면에서도 단순 감지용 기기에서 출발하여 IoT와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졌고, 응급·안전 모니터링 외에 말벗 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.
- 다만, 예산의 제약²⁾ 등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가구의 수는 256,105가구로 전체 노인 1인 가구 수(2,288,807)의 11.2%에 불과한 상황이고,

2) 2026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97,000대(2020~2026년 누적 대수)의 장비를 임차·운영할 계획이며,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업으로 329억원의 국비를 지원(50%)할 계획임.

동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 가구 수 또한 4.4만 가구(2025년 12월 기준)³⁾에 달하는 실정임.

<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가구 수 비율 >

(단위: 가구 수, %)

구분	2023	2024	2025
65세 이상 1인 가구 수(A)	2,138,107	2,288,807	-
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노인 가구 수 ¹⁾ (B)	227,328	256,105	264,274
노인 가구 수 비율(B/A)	10.6	11.2	-

주1)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노인 가구 수에는 독거노인, 저소득층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 수를 포함함

※ 2025년도의 65세 이상 1인 가구 수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어 있지 않음(다음연도 7~9월 사이 발표)

자료: 보건복지부, 국가통계포털

- 한편,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사람⁴⁾이 직접 안전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스마트기기 등의 장비를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,600억원의 비용절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 연구⁵⁾ 결과가 있고,
-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대인·대면 서비스를 접목시킨 IoT 센서 기반 돌봄서비스를 3개월간 운영한 결과, 실험집단 참여자들의 식사 패턴과 수면 시간, 활동 시간 적절성 등의 일상생활 패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⁶⁾ 결과도 있음.

3) 자료: 보건복지부

4) 독거노인 25명당 생활지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

5) 「초고령사회 대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방안 연구」(한국사회보장정보원, 2025.9.)

6) 「IoT 센서 기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변화와 만족도 연구」(한국산학기술학회,

- 따라서 개정안은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통해, 증가하는 공적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노인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참고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통해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(서울시), AI 노인 말벗서비스(경기도), 실버케어 순이(용인시),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(제주시)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노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.

<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노인 지원 서비스 현황 >

구분		서울시		경기도	용인시	제주시
		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	스마트 돌봄 서비스 ¹⁾	AI 노인 말벗서비스	실버케어 순이	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(시범)
서비스 대상		취약계층 노인	1인 가구 (나이불문)	65세 이상 노인	독거노인	장년 1인 가구
콘텐츠	전력량확인		○			○
	움직임감지	○	○		○	
	AI안부전화		○	○		
	응급위기알림	○	○		○	○
	AI스피커					
	앱 기반		○		○	
웨어러블기기					○	

주1) 서울시 스마트돌봄 서비스의 콘텐츠는 자치구별 운영되는 여러 서비스의 콘텐츠를 포괄함
 자료: 보건복지부, 한국사회보장정보원

□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종류(대면, 비대면)와 형태(예: 가정 내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 스피커 등)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독거노인에 대한 요양·돌봄·보호조치 시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의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496